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20502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20502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900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신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양희

변론 종결2022. 8. 10.

판결 선고2022. 10. 19.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합5900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대 73m²에 관하여 2020. 3.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수원시 권선구 D 대 73m²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347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제9면 1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3항에서의 각 "피고 C"을 "피고"로, 각 "피고 B"를 "B"로, 제3면 4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 각 "피고 회사"를 "A"으로 각 변경한다.

○ 제6면 12행의 "매도하였을 당시"를 "매도하였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제외한"으로 변경한다.

○ 제6면 표 내 13행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적극재산"으로 변경한다.

○ 제7면 1행의 "이와 같이"를 "한편, B는 피고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2020. 2. 28.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3. 5. 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이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더라도"로 변경한다.

○ 제7면 15행부터 19행까지 부분을 "② A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로 변경한다.

○ 제8면 1행의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를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라 한다)"로, 8행의 "채무자의"를 "(1) 채무자의"로 각 변경한다.

2. 변경 부분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자는 B가 아니라 A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B가 채무초과의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B가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소규모 회사인 점, ② B는 A의 대표자로서 2019. 8. 5.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1. 11.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도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할 당시 A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총 공사대금의 약 43%에 이르렀던 점, ④ A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 사건 지급보증각서에서 2019. 11. 21.까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⑤ 결국 A의 대표자인 B가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2020. 2. 28.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3. 5. 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⑥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위 2020. 2. 28.자 부동산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에 대비하여 특약사항에 "소유권이전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하며 등기부상 변동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 점, ⑦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자는 A이고, B는 그 채무자가 아님에도 A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B의 총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김경란

판사권혁중